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가합31365 판결 [보증채무금]

재 판 경 과

서울고등법원 2023. 12. 20 선고 2023나20330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가합31365 판결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연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는 C(D 생), E(F 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14,606,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류(교복류 포함)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나. 대리점 기본계약의 체결

원고와 C은 2010. 12. 27. 원고가 생산하는 학생복을 C이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G 광주서구점'1) ,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13조는 C이 원고에게 지불할 대금의 세부내역을 개별계약(대금지불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C은 이에 관한 대금지불약정도 체결하였다.

다. 연대보증서의 작성

피고는 2013. 4. 9.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 연대보증서의 작성 · 교부로 인하여 성립한 연대보증을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C이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가 생산, 판매하는 원고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C이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수표 등 원고에게 C이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피고가 C과 연대하여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피고는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고의, 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라. 선행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21년경 C 및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E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8. 24.「C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44,606,6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21가합114585호,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2. 9. 15.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C이 2010. 12. 27.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 피고가 2013. 4. 9. 원고와의 상거래로 인하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C 및 연대보증인인 E과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 판결에서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744,606,614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물품대금 중 30,0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연대보증한 C의 물품대금채무액 중 남은 금액은 714,606,614원(= 744,606,614원 - 30,000,000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C,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14,606,614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위반에 따른 연대보증의 무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연대보증은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상거래로 인하여 계속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근보증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3) 에 따라 효력이 없다.

나) 판단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다.목은「기업4) 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같은 호 라.목은 사업을「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보증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보증인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갑 제4에서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C 및 E과 이 사건 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인보호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G 광산점'을 운영하는 I는 2023. 5. 12.「피고를 'G 광산점'의 개업식 때 이 사건 대리점의 점주 자격으로 개업식에서 보게 되었고, 피고는 자신과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 소재하는 협의회 및 '네이버 밴드'에서도 함께 활동하였다. 'G' 대리점의 경우 점주들이 인접 대리점들에 방문하여 제품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자신은 피고를 이 사건 대리점의 점주로 인식하면서 제품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G 운암점'을 운영하는 J은 2023. 5. 15.「'G' 매장을 운영하면서 대리점 간에 제품 전용을 많이 했는데, 특히 E, 피고 부부가 제일 많이 제품 전용을 요청하였다. 제품 전용이 이루어지면 피고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와 E은 이 사건 대리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대리점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차례로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 J이 원고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대리점주들이므로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각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K' 네이버 밴드에서 이 사건 대리점의 이름으로 활동하거나, 대리점 간 거래에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므로,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⑵ 피고는 2015년도 L중학교의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포함한 20여 건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계약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M중학교의 2014년 교복공동구매 및 2016년도 N여고 교복의 납품업체 선정 결과 공고에서는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자로 기재되었다. 또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21. 4. 16. C에서 E과 피고의 아들인 O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대리점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위 대리점의 계약 담당자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E과 피고가 C의 대표자 지위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⑶ 피고는, E의 사업 실패로 인해 C의 아버지인 P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자, C을 도울 의도에서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에 참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3. 1. 2.부터 2021. 7. 1.까지 이 사건 대리점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이 사건 대리점에서 합계 12,000,000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C의 운영을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E과 피고의 대리점 운영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E과 피고의 역할이 단순히 C의 영업을 조력하였다는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민법 제428조의3 위반에 따른 연대보증의 무효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민법 제428조의3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이 민법 제428조의3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428조의3은 2015. 2. 3. 민법이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부칙(제13125호, 2015. 2. 3.) 제1조, 제3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연대보증은 민법 제428조의3이 최초로 적용되기 전인 2013. 4. 9. 체결되었으므로, 위 연대보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1년마다 갱신됨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 역시 1년마다 갱신되었으므로, 민법 제428조의3의 적용 이후 갱신된 연대보증은 위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 이전까지 발생한 연대보증채무는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5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원고 또는 C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 종료 시점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서면에 의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원고의 계약 내용 추가나 변경으로 인한 갱신의 경우, 원고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재계약체결을 의무화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의 기간을 적용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달리 이 사건 연대보증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의 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C이 원고와 상거래를 하면서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로, 그 채무가 원고와 C이 최초로 체결한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른 것으로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25조의 내용 및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사이의 거래 구조를 고려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최초 체결된 후 기간이 연장되면서 일부 계약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면서 형식적으로 재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대리점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판사 송효섭, 판사 임현수

1)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가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연대보증서(갑 제2호증의 1)에는 연대보증서의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일자에 연대보증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3) 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4)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